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뿌리산업 체험프로그램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 추가〉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213434호)

2026. 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 희 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정 부
2. 제 안 일 : 2025. 10. 1.
3. 회 부 일 : 2025. 10. 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동등하게 국가의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실시하는 뿌리산업 관련 체험프로그램의 대상으로 학생 외에 학교 밖 청소년을 추가하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제조업 기반의 공정기술과 차세대 공정기술 등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뿌리기술¹⁾과 관련한 체험프로그램의 실시범위를 “학생”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²⁾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24조(뿌리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산업통상부장관은 뿌리산업의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학생 등에 대한 체험프로그램 실시 등 뿌리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뿌리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 ----- ---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 ----- -----.

1)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뿌리기술”이란 주조(鑄造), 금형(金型), 소성가공(塑性加工), 용접(鎔接), 표면처리(表面處理), 열처리(熱處理) 등 제조업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기반 공정기술과 사출(射出)·프레스, 정밀가공(精密加工), 로봇, 센서 등 제조업의 미래 성장 발전에 핵심적인 차세대 공정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현행법상 학교에 소속된 학생에 대하여는 뿌리기술 관련 체험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으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체험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정부는 학교 소속 여부에 따라 교육과 체험 기회를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학생”을 사업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등 9개 법률에 대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사업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9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2025년 10월 국회에 일괄하여 제출하였음.

<표 1> 학교 밖 청소년 동일대우 취지 법률안

소관 위원회	소관 부처	법률명 (의안번호)	주요내용	발의일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위원회 (전체회의 미상정)	산업 통상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2213434)	• 학교 밖 청소년을 뿌리기술 체험 프로그램 등 지원 대상으로 추가	‘25.10.01
	지식 재산처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213432)	• 학교 밖 청소년을 발명교육 지원 대상으로 추가	‘25.10.01
		발명진흥법 (2213431)	• 학교 밖 청소년을 발명교육 경비 지원 대상으로 추가	‘25.10.01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 위원회 (전체회의 미상정)	농림축산 식품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2213429)	• 학교 밖 청소년을 현장체험활동 및 봉사활동 지원사업 대상으로 추가	‘25.10.0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2213424)	• 학교 밖 청소년을 농촌지역에서의 학습기회 확대 정책 대상으로 추가	‘25.10.01

		동물보호법 (2213428)	• 학교 밖 청소년을 동물보호교육 대상으로 추가	'25.10.01
	해양수산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2213430)	• 학교 밖 청소년을 어촌지역에서의 학습기회 확대 정책 대상으로 포함	'25.10.01
	산림청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2213425)	• 교육정원의 목적에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놀이가 포함됨을 규정	'25.10.01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 위원회 (전체 회의 미상정)	과학기술 정보통신 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2213457)	• 학교 밖 청소년을 양자과학기술 관련 교육사업 지원 대상으로 추가	'25.10.02

미국의 경우 청년고용예산의 75%를 학교 밖 청소년(Out-of-School Youth, OSY)에 사용하고 직업훈련예산의 20%를 현장형 훈련에 배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³⁾, EU는 회원국에게 교육·고용·훈련 미참여 청년(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NEET)을 대상으로 4개월 이내 취업·교육·훈련·도제기회를 제공하도록 권고하고 있음⁴⁾.

현행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밖 청소년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체험 및 훈련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게 하고 있는 점⁵⁾,

3) Workforce Innovation and Opportunity Act (WIOA), (29 U.S.C. §3164)

4) Council Recommendation on a Reinforced Youth Guarantee, '2020.10.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적성 검사 및 진로상담프로그램
2.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
3. 직업소개 및 관리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직업체험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험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뿌리기술이 주조·금형 등 기반 공정기술과 사출·프레스 등 차세대 공정기술로서 학교 밖 청소년의 취업과 진로설정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뿌리기술 관련 체험프로그램의 실시대상을 학교 밖 청소년으로 확대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460

및 태도를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업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